

■ 법률 칼럼

### 영주권 신청 시 재정보증의 중요성

#### 1. 재정보증의 개요 및 중요성 증대 이유

지난 몇 년 동안 가족 초청(결혼을 통한 초청 포함)으로 영주권 스폰서를 하는 경우에 재정보증(I-864)이 가장 중요한 요건(requirement)이 되었습니다.

영주권 재정보증이란 영주권 신청 시에 통상적으로 초청자(Immigration Petitioner)가 보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초청자의 재정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에는 연대보증인(Joint Sponsor)을 세울 수도 있습니다. 영주권을 신청하시는 분이 영주권을 받은 후에 만약 특별한 사정(보통 건강상의 문제)로 주정부 또는 연방정부의 복지 혜택(보통 병원비)을 받게 되면 주정부나 연방정부가 이 보증인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정부가 비용을 청구한 사례는 흔치 않습니다.

이렇게 이민자가 미국 정부에 부담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보증인을 세우는 것이 이 재정보증제도의 취지입니다. 그래서 특히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는 이민자가 미국 정부에 주는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취지로 재정보증 서류를 가장 중요한 서류로 이민 절차에서 취급했었습니다. 친이민적인 새 행정부가 출범을 하기는 했지만 미국 여론이 비이민자에 대한 혜택에 대해서 적대적이기 때문에 큰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할 때 영주권 신청 시에 재정보증에 대해서 전문가와 상담을 하고 주의할 것을 권고드립니다.

#### 2. 재정 보증의 구체적 내용(자격 요건, 보증 기간 등)

이 재정 보증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면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주권 재정보증(Affidavit of Support, I-864)이란 영주권 스폰서와 미 연방정부 사이의 계약입니다. 이 계약을 통해 영주권 스폰서는 일정 기간 동안 영주권 신청자를 재정적으로 지원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 스폰서가 적절한 재정적인 지원을 하지 못해서 영주권 신청자가 공적인 정부 지원금(public charge)을 받게 될 경우 연방정부는 소송을 통해서 이 지출된 지원금을 보전할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영주권 스폰서의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

습니다.

- 1) 18세 이상의 성인이어야 합니다.
- 2)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여야 합니다.
- 3) 일정액 이상의 연간 소득을 증명해야 합니다(미국 연방정부가 정한 극빈자 소득의 125%의 연간 소득이 요구됩니다).

스폰서의 재정 자격 요건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 보면, 스폰서는 이민국에 소득을 증명하는 서류로 가장 최근의 세금보고서, W-2 그리고 Paystub등을 기본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 직장의 재직증명서까지도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스폰서의 재정보증 소득이 부족한 경우는 소득이 충분한 연대보증인(Joint Sponsor)이 스폰서와 함께 재정보증을 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재정 보증을 할 때 부부가 공동으로 세금 보고한 경우(joint tax return), 보증을 서는 분의 배우자의 동의 양식(I-864 A)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재정보증과 관련하여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는 것은 얼마 동안 이 재정보증의 의무가 지속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스폰서는 약 10년 동안 재정 보증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재정보증서에 서명을 하고 10년 안에 영주권 신청자가 연방정부 보조금을 받게 되면 연방정부는 스폰서에게 이 재정 지원에 대한 보존을 법적 소송을 통해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10년은 영주권자의 40분기 세금 보고 기간에 해당되는 기간입니다. 그리고 이 영주권자가 시민권자가 되면 재정보증의 의무가 사라지게 됩니다. 또 영주권자가 영주권을 상실하여 해외로 이주하는 경우에도 보증인의 책임이 없어집니다.

Law Offices of  
Joseph KW Cho  
천관우 변호사

● LA Office: (213) 232-1655  
● OC Office: (714) 522-5220

매주 첫째주 월요일 라디오 코리아 이민상담 진행



■ 치과 칼럼

### 치아 상실에 따른 변화

이가 빠진 후 오랫동안 수복하지 않은 경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가 빠져도 씹는데 지장 없으니 그냥 놔두기로 했다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될까요? 물론 어떤 치아가 빠졌느냐에 따라 증상은 다양하게 결정됩니다. 우선 어떤 치아가 제일 많이 상실되는지 알아보는 데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문헌들에 따르면 사랑니를 제외하고 상악 제1대구치, 즉 위턱의 제일 큰 어금니의 상실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뒤를 이어 하악 제1대구치, 상악제2대구치, 하악 제2대구치 순으로 높다고 합니다. 이렇듯 어금니의 상실율은 다른 치아들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고 이 이유로 잇솔질의 어려움을 가장 큰 원인으로 두고 있습니다.

아래 큰 어금니가 빠졌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부위를 수복하지 않은 채 오랜 기간 동안 방치 했다고 하자. 수처에 걸쳐 언급했듯이 치아의 위치는 주변 치아와 근육들이 이루는 힘의 균형에 의해 결정됩니다. 치아가 빠지면 이런 힘의 균형이 깨지게 되고 위쪽과 전후 치아들은 힘을 받지 않는 쪽으로 기울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뒤쪽 치아는 앞으로 쓰러지고 위쪽 치아는 아래로 맹출하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조화로운 교합의 형태를 무너뜨리며 장기간 방치했을 경우 브릿지나 임플란트로도 수복할 수 없을 정도로 공간을 상실하게 되고 악관절증이나 골근육계 이상증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런 치아 배열의 불균형은 올바른 구강 위생법을 할 수 없는 상태까지 이르게 되고 결과적으로 잇몸질환이나 충치를 유발하는 위험인자로 작용하게 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 나머지 치아들은 제 위치에 균형을 이루고 있는 상태에서 어

금니가 모두 상실됐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큰 어금니들의 역할은 주로 음식물을 씹어 잘게 부수는 기능을 담당하는 것입니다. 어금니들은 다른 치아들에 비해서 크고 또 지지를 담당하는 뿌리도 두 개에서 많게는 네 개까지 있는 것도 이런 기능을 충실하게 담당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이런 치아들이 모두 상실되었다면 결국 남아 있는 치아들이 이 기능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고 그러다보면 이가 자주 닳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이 과정이 매우 느리게 일어나면서 근육들은 그 기간 동안 적응해버리기 때문에 가끔 악관절증을 일으킨다고도 하지만 어떤 특별한 증상 없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되다보면 어느덧 이를 다물었을 때 치아가 상실된 부위의 위턱과 아래턱의 공간이 너무 없어 어떠한 보철물이 들어갈 수 없을 지경에 이르게 되기도 합니다. 물론 임플란트가 심겨질 수 있겠지만 그 위에 만들어질 크라운을 위한 공간이 없어서 임플란트를 심어도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닳아 없어진 치아를 크라운을 하던지 아니면 교정적으로 치아를 맹출시켜서 닳아 없어진 만큼의 치아 부분을 복원시켜 올바른 교합을 재 형성한 후 임플란트든지 다른 보철물을 통한 치료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선 공간 부족에 따른 여러 문제로 계획대로 치료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치아가 상실된 경우 바로 치과로 내원하여 원래 가지고 있던 상태로 바로 복원하는 것이 가장 좋은 치료법인 동시에 가장 중요한 예방법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YON DENTAL GROUP  
Gene H. Park DDS, MS  
한인치주 임플란트 수술 전문의  
Fullerton Office: (714) 519-3332



# 프리미어 공인세무 그룹

## 세금보고 미국 전 지역 서비스

- 세금보고
- 법인설립
- 해외자산보고
- 연체세금 해결
- 세무감사대행
- 상속, 증여세금보고

예약 후 방문  
상담 가능

PREMIER TAX GROUP (714)530-2033  
8942 Garden Grove Blvd. #203, Garden Grove, CA 92844

각종 세금 관련 상담 및 문의  
info@isemusa.com  
taxcapital@gmail.com